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381

발의연월일: 2022. 4. 25.

발 의 자 : 홍성국 · 정태호 · 김경만

민병덕 • 이개호 • 이병훈

김병기 • 김원이 • 최기상

양기대 • 변재일 • 김성주

노웅래 • 홍익표 • 강선우

김상희 · 전용기 · 이용우

최혜영 의원(19인)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 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 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 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 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금융당국의 고령금 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시행 등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함(안 제2 조제11호 신설).
-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 별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
-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69조제1항).
- 라.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1조제2항).
- 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사.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상대방이 고령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5조 중 "학력"을 "나이·학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세부내용은"을 "세부내용, 제3항에 따른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설명 및확인의 방법과 설명서 작성의 기준은"으로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때에는 고령금융소비자가 알기쉬운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제공할 때에는 고령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보고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 금융피해가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보고한 조사의 결과 와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를 "제2항에 따른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비교공시의 기준 및 방법, 제3항에"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 가 알기 쉽도록 별도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공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1항·제3항"을 "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고령금융소비자인지 여부 제6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령금융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
	<u>한다.</u>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	제15조(차별금지)
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	
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	
별・ <u>학력</u> ・장애・사회적 신분	<u>나이·학력</u>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	
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	
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설명의무) ①・② (생	제19조(설명의무)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때에는 고령금융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
	명서를 제공할 때에는 고령금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용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

세부내용, 제3항에 따른 고령금 융소비자를 위한 설명 및 확인 의 방법과 설명서 작성의 기준

제27조의2(고령금융소비자 금융 피해 보고 등) ①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합당 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 다)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금융교육) ①・② (생 제30조(금융교육) ①・② (현행과 략) 같음)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금융소비

③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 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보고한 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 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금융소비 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 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을<u>개발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금융감독

원장-----

-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 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략)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생략)

<u><</u>신 설>

2. • 3. (생 략)

③ ~ ⑦ (생 략)

(생 략)

<신 설>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 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생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현행 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1의2.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 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2. · 3.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 고령금 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별도 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공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고령금융 소비자를 위한 비교공시의 기

의 절차, <u>제3항</u>에 따른 금융소 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 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 🗷 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3항, 제20조제1 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 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 저 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u> </u>
제4항
<u> </u>
세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제1항 · 제4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58조(과징금의 부과) ①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② •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다.

1. • 2. (생략)

<신 설>

3. ~ 13. (생략)

② ~ ④ (생 략)

 									_					
 	 	-	_	_	 _	_	 	_		 	-	_	_	
 	 	-	_	-	 -	_	 	-		 	-	_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고 령금융소비자인지 여부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령금융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거 나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설 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3. ~ 1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